

물품계약위반시 합리적인 기간 내의 부적합통지의무 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uty of Nonconformity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Goods

김은빈*

Eun-Bin Kim

〈목 차〉

- I. 서 론
 - II. 물품계약위반과 통지의무
 - III. 물품계약위반의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외국판례와 중재판정의 태도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주제어 : CISG, 계약위반, 물품계약접합성, 합리적인 기간, 통지의무

*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강사, ebi8956@naver.com

I. 서론

국제물품매매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적확실성을 보장하고 국제무역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CISG가 1980년 제정, 1988년 발효되었다.¹⁾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2월 17일 CISG에 가입, CISG는 2005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서 발효되었다.²⁾ 특히, CISG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물품거래에 있어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이들과의 물품거래에는 CISG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CISG의 계약국과의 거래에는 명시적으로 당사자들이 CISG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핵심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국가가 협약의 취지대로 CISG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지는 이다.³⁾

CISG는 국제매매계약의 성립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이다.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 맞는 적합한 물품을 인도함이 매도인의 의무이며 매수인은 의무에 의해 계약 상의 내용과 적합한 물품을 수령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대하게 된다. 매도인은 계약에 부합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지만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부적합한 지의 대한 여부는 계약 상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된다.

1988년 발효 이후 CISG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CISG 조항의 의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해설서에서부터 계약의 성립,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손해배상, 구제권 등 개별조항의 의미를 분석하는 논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물품의 적합성 또는 적합성 결여와 관련된 연구들과 계약 적합성의 요건을 CISG의 관점 또는 당사계약에 관한 UNIDROIT규칙, 유럽계약법원칙(PECL)등 유럽법과의 비교 등에 머물러 있는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다수로 이루어지고 있다. CISG와 제조물책임법은 계약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품으로 인해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야기한 물적손해에 대해서 적용된다. CISG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물품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물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협약과 제조물책임법을 모두 적용 가능하다. 기존

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980)

2) 임재욱,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4, p.160.

3) 손태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상의 통일성에 관한 최근 미국판례의 태도와 그 선택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4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p.400.

4) 한나희·하충룡,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함의”, 「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한국통상정보연구, 2016, p.198.

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CISG의 매수인의 문제제기 기간의 불합리성을 사례를 통해 ‘합리적인 기간’과 ‘매수인보호’ 차원의 접근 방법으로 차별을 두고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처리과정은 복잡하게 전개됨이 일반적이다.⁵⁾ 특히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⁶⁾에서 물품적합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CISG의 제35조, 제39조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CISG의 제35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제 1항), 당사자간의 달리 합의한 바 없으면 제35조 제2항이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특히 동항 a항에 따르면 매도인이 인도한 목적물은 동종 물품의 통상사용목적에 맞아야 하고, b항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아야 하는데, 이와 같이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이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목적적합성(fitness for purpose)⁷⁾이라는 개념은 우리 민법과 상법에서 생소하므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CISG의 제39조는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의무를 규정하는데, 실제로 제39조를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조약이다. 그 이유는 CISG에서 제39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합리적인 기간 내의 통지”에서 그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를 입은 매수인이 CISG(제39조)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않았다면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물품부적합의 통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CISG 상의 제39조는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다.

국제물품거래에서 계약은 사적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당사자 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면 쌍방 간 권리와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당사자는 법적 구제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⁸⁾ 따라서, CISG의 적용을 받는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는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통지의무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본 협약 체결국의 법원들이나 중재기관이 본 협약에 규정된 물품계약위반의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통일적인 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전 세계의 국제물품매매 거래의 대부분이 CISG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각 국의

5)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통상정보연구, 2012, p.232.

6)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8, p.222.

7) Schlechtriem 교수는 통상사용목적 적합성을 “fitness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goods would ordinarily be used”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특별사용목적 적합성을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라고 표현하고 있다.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575-580.

8) 김진규·이윤, “CISG 상 국제물품거래의 계약위반과 결과적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24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연구, p.118.

법원판결이나 또는 국제 중재에서 본 협약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통일된 원리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협약 체결국들의 판결문이나 중재판정문 분석을 통해 본 협약 적용의 통일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CISG의 제7조 제1항의 내용⁹⁾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

II. 물품의 계약위반과 통지의무

1. 물품 계약적합의무

CISG에서는 물품결합의 문제를 물품부적합으로 표현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상당히 하고 있다. 인도된 물품 자체에 흠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부족하게 인도한 경우, 초과 인도한 경우, 다른 종류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 심지어 포장에 잘못된 물품을 인도한 경우도 모두 물품 부적합한 경우에 포함시키고 있다(CISG 제35조 제1항). 결국 사실상 인도된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것과 다르다면 모두 물품 부적합이 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상에 정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적합성(conformity of contract)에 대한 의무는 물품적합성(conformity of goods)¹⁰⁾과 권리적합성¹¹⁾으로 나뉘지만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과 적절한 비교를 하기 위해 CISG 제35조에 명시된 물품적합성에 관해서만 서술하려고 한다.

(1) 계약 상의 합의

CISG는 제35조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종류 등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동조 1항에서는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러나 CISG는 물품의 수량, 품질 또는 포장과 관련된 계약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제35조 제1항이 규율하는 계약의무의 부과과정은 CISG 제II편(“계약의 성립”)과 제I편의 규정(제8조 및 제9조)에 기술된 일반적인 계약체결과정에 따른 것이다.¹²⁾

9) 본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본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본 협약 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할 필요성 그리고 국제 거래에서의 신의를 준수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물품 그 자체가 수량·품질·종류·포장 등에 있어서 계약과 일치하는 것.

11) 매수인이 그 물품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물품에 대한 제 3자의 권리주장이 없는 상태.

12) Harry M. Flechtner, “Funky Mussels, A Stolen Car, and Decrepit Used Shoes: Non-Conforming Goods and Notice thereof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CISG”),”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6, 2008, p.5.

또한 이 규정은 당사자간의 계약자유원칙을 인정하여 계약적합성 기준의 최우선 순위가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임을 논하고 있다.¹³⁾

매도인은 제35조 제1항의 조문에서 언급된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이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계약요건만이 매도인의 의무를 결정하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해석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당사자가 행한 진술, 의도의 수령자가 그러한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리가 없었을 경우 그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이러한 당사자의 의도는 합리적인 정보의 수령자가 가졌을 이해와 일치하게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¹⁴⁾

특히 장거리 운송을 포함하는 국제매매의 경우 운송 중 감량이 발생할 수 있고 대량 계약의 경우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조 1항에서는 수량, 품질과 종류만을 열거하고 있지만 수입국의 공법상의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는 묵시적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¹⁵⁾ 수량의 차이와 일부 인도의 물품의 부적합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매수인으로서 는 부적합 통지를 해야한다.¹⁶⁾

(2) 물품적합성

계약당사자들 간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물품적합성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¹⁷⁾ 본 항은 계약에서 물품이 충족시켜야 할 세부 요건 사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된 경우에는 물품적합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객관적 기준(a series of objective criteria)을 제시한다.¹⁸⁾ 제35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적합성의 판단기준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¹⁹⁾ 물품은 동종 물품의 통상사용목적에 맞아야 한다. 이 경우 계약에서 물품에 대해 어떠한 수량·품질·규격 또는 특정방식의 포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결정하는데 있어 반드시 통상의 규칙에 따라 양당사자가 그들의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완벽한 물품을 요구하는 것은 아

13)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2, pp.1-16.; 오원석·이병문,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물품 인도 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제1호, 2008, pp.3-33.;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2권 제2호, 2007, pp.399-420.

14) R.F. Henschel, “The Conformity of Goods in International Sales, Thomson, Cad Jura, 2005, p.148.; F.Enderlein and 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ceana Publications, 1992, p.47.

15) S/M, Art. 35 Rn. 22 참조.

16) S/M, Art. 35 Rn. 15.

17) Elderlein an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N.Y. Ocena, 1992.

18)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1149.

19) 통일상법전 §2-314의 상품성과 유사함.

나라는 사실이다. 둘째, 물품은 계약체결 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력과 판단력을 신뢰하지 않았거나 이를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본 조의 요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셋째, 매도인이 견본²⁰⁾ 또는 모형²¹⁾으로 매수인에게 물품의 품질을 제시한 경우 물품은 그 품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해 둔 바가 없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물품의 모형을 제공한 경우에 본조가 적용된다. 넷째,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계약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어야 한다.

(3) 적합성 위반 판단시점

CISG에서 물품의 계약적합성 위반의 판단시점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부터 적용되는데 위반이 위험의 이전시점 이후에 밝혀지더라도 그 위반에 대한 법률과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36조에서는 위험이전 시의 계약 부적합(제36조 제1항)과 위험이전 후의 계약부적합(제36조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에 관한 위험의 이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 존재하였던 물품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며 물품에 관한 위험의 이전 전에 부적합이 존재하였다면 그 부적합의 발견이 위험의 이전 후에 이루어진 때에도 매도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약부적합의 판명시기가 아니라 계약부적합이 위험이전 시에 존재하는 가이다. 한편 2항에서는 위험의 이전 후에 부적합이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첫째, 매도인의 의무위반²²⁾의 경우 매도인이 책임을 지며 둘째, 매도인이 물품을 보증한 경우²³⁾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계약부적합이 위험의 이전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부적합에 관하여도 그것이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의 위반에 기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책임을 진다. 의무위반에는 일정한 기간동안 물품이 통상적인 목적 또는 어떠한 특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성을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보증특성의 위반도 포함한다.

제한요건으로 매수인은 물품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여야 했을 때로부터 상당한(reasonable)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내용을 명세하여 통지(notice)하여야 한다.²⁴⁾ 이 경우 통지의 제척기간(exclusion period)²⁵⁾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실제로 인도된 날을 기준

20)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 중에서 꺼낸 것.

21) 물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검사를 위하여 제시된 것.

22) 인도시를 기준으로 물품 자체의 포장에는 하자가 없으나 예정된 운송을 감당하기에는 부적당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송 중에 물품이 파손된 경우 등을 말함.

23)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리해주시기로 약정하거나 물품이 일정한 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증하거나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고 보증한 경우임.

24) 제39조 제1항 부적합의 통지.

25) 제척기간은 어떤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이다. 따라서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

으로 2년이다.

2. 매수인의 물품검사의무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과한다. 검사의무는 그 자체 보다는, 검사의무를 게을리한 매수인은 제39조에 따른 부적합통지를 하지 않게 되는 결과 부적합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점에 의미가 있다. 만일 매수인이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제 39조에 따른 부적합통지를 하였다면 검사의 해태를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검사의무의 지체는 신속한 부적합통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다.²⁶⁾

(1) 검사의 방법

협약은 명시하지 않지만, 검사는 모든 세부적인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완벽한 검사가 아니라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상관행에 부합하는 검사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매매계약과 당해 거래의 국제적인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물품의 유형과 당사자의 성질에 달려 있다.²⁷⁾매수인은 물품의 성질, 포장 및 수량 등에 관하여 물품이 계약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검사하여야 하고, 검사는 물품에 잇을지도모르는 결함을 발견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²⁸⁾

검사는 단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전문가적이어야 하나,²⁹⁾ 다만 매수인의 검사는 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검사는 할 필요는 없다.³⁰⁾

(2) 검사의 기간

매수인은 상황에서 실행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직접 검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검사기간의 개시시점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협약 제31조에 따라 결정되는 인도장소에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때, 즉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이다.³¹⁾

‘실행가능한 단기간’이라 함은 제71조 제3항의 ‘즉시’(immediately)보다는 유연한 개념이

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됨.

26) S/M, Art.38 Rn. 13.

27) Atr. 36 para. 3; S/M, Art. 38 Rn. 28.

28) S/M, Art. 38 Rn. 28-29.

29) S/M, Art. 38 Rn. 31.

30) S/M, Art. 38 Rn. 31.

31) S/M, Art. 38 Rn. 36.

나 ‘합리적인 기간 내’보다는 엄격한 짧은 개념인데, 그 기간은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개별 거래의 내용과 물품의 종류, 성질, 인도의 규모, 포장방법, 거래관행, 검사의 장소·시설·능력, 대행물품검사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 기타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검사는 제39조에 따른 부적합통지와 결부되므로 검사기간은 부적합통지의 기간과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

(1) 합리적인 기간 내의 부적합통지의무

제39조에서는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으로서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포함하여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물품부적합의 통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2) 통지기간의 개시

부적합통지를 위한 기간은 “매수인이 검사를 통하여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 하였거나 검사를 하여 부적합을 발견하여야 했던 때”로 개시된다. 부적합을 발견하여야 했던 때라 함은 매수인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부적합을 발견할 수 있었던 때를 말한다. 숨겨진 결함의 경우 통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간이 매수인이 실제로 부적합을 발견한 때로부터 진행하지만 매수인에게 계속적으로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제39조2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에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는 매도인이 물품의 교부 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물품부적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합리적인 기간

ULIS(제39조)에서는 ‘신속하게’(promptly) 통지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협약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간’은 그보다 완화된 것이다. 합리적인 기간은 일률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에 적응하여 적절히 결정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지나친 법적 불안정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정형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는 물품의 성질, 결함의 성질, 기타 외부적 상황, 인적상황, 선택된 구제수단 등을 든다.³²⁾ 독일,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은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³³⁾

Ⅲ. 물품계약위반의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외국판례와 중재판정의 태도

CISG에서는 물품의 계약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판결 및 중재판정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어느정도로 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 협약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은 이론없이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협약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판결이나 중재판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본 장에서는 CISG에 의해 규율되는 외국 판례와 중재판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외국판례

(1) 미국 육류사건³⁴⁾

1) 사실관계

미국 육류를 취급하는 도매상인 매수인과 캐나다 육류 도매상인 매도인을 상대로 돼지 갈비가 미국 소매업자에게 납품된 뒤 상했다고 비난을 받아 판매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다.

2) 판결내용

본 사건에서는 사업장이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이며 매도자와 매

32) Sha Dong-Cheon, A Comparative Study on Buyer's Obligation to the Notice about the Non-conformity with the Contracts of Goods- Focusing on CISG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2007,16 • 2,270.; Ha Sam-Joo and Yeo Tae-Shig, Obligations of the Buyer to Examine the Goods and Notify the Lack of Conformity under the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KCLA,2004, 23 • 3, 577.

33) 독일에서는 이를 좀 엄격하게 보아,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물품의 경우 검사와 하자통지를 위한 총기간으로 확설과 판례에 의하여 8일, 14일, 1개월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탈리아민법(제1495조 제1항)에 따르면 8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탓에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당사자들의 기대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1개월 내에 통지하면 족하다고 한 판결들이 있다.

34) Chicago Prime Packers, Inc. v. Northam Food Trading Co. 320 F.Supp.2d 702

수자간에 어느 당사자도 CISG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CISG의 적용을 받는다.

매수인의 물품거부가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을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검사를 이뤄야하는 것에 대해 물질적 사실에 대한 문제가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매수인은 CISG의 규정에 의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해당 선적을 검사하거나 검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본 물품이 CISG 제35조항에 어긋나는 계약 부적합한 물품을 제공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CISG 제39조의 통지의무에 따라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가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었지만 계약부적합에 관한 입증책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계약부적합을 입증을 하여야 하였다. CISG의 검사조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선적을 조사했거나 검사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양도 시 물품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패소하였다.

3) 시사점

본 사건에서 CISG의 ‘합리적인 기간’이라는 규정 상의 문구는 매수인이 물품을 신속하게 검사하고 결함을 즉시 통보하라는 의도를 나타내며 CISG상 규정하는 “2년”이라는 기간은 2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이기 보다는 늦은 통지를 막고 가능한 즉시 통지할 것을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언급되었다.

(2) 냉장고 사건³⁵⁾

1) 사실관계

Electrocraft(Electrocraft Arkansas, Inc.)가 Super Electric에서 구입 한 결함이 있는 냉장고 모터와 관련된 냉장고 사건이다. Electrocraft는 델라웨어 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냉장고 제조업체에 전기 냉장고 모터를 공급하며 슈퍼 일렉트릭은 냉장고 모터의 제조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홍콩의 법률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제조 시설은 중국 심천에 있다. 2002년부터 슈퍼 일렉트릭은 일렉트로크래프트가 슈퍼 일렉트릭에 제출한 설계 및 사양을 기반으로 일렉트로크래프트로부터 받은 구매 주문에 따라 전기 모터를 제조했다. Electrocraft에 따르면, 모터는 Electrocraft에 의해 검사 된 후 의도 된 목적 (냉장고에 통합되어 냉장고를 시원하게 만드는 냉장고에 통합)으로 활용 될 수 있었고 월폴 및 기타 제조업체를 포함한 Electrocraft의 고객에게 전달되어 냉장고에 통합되었다. 일렉트로크래프트는 2008년 7월, 슈퍼 일렉트릭이 공급하는 모터가 용납할 수 없는 속도로 고장났다는 통지를 고객들로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lectrocraft는 제조 결함으로 인해 모터에 불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의도 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 결함이있는 모터가 최

35) Electrocraft Arkansas, Inc. v. Super Elec. Motors, LtdF.Supp.2d, 2010 WL 3307461

중 사용자에게 의해 Electrocraft로 반환되어 Electrocraft가 고객에 대한 계약 의무를 이행 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2) 판결내용

CISG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홍콩과 미국은 CISG의 계약국이며 양 당사자는 서로 다른 계약국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CISG가 적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일렉트로크래프트는 고객으로부터 부적합을 알게 되자마자 슈퍼일렉트릭에 상품의 부적합을 통보했으며(그리고 슈퍼 일렉트릭이 상품의 부적합을 확인했다는 점), 통지에 관한 분쟁은 일렉트로크래프트의 검사가 CISG에 따라 시기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한 물질적 사실의 진정한 문제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제38조), 그리고 적합성 결여의 본질을 명시한 통지가 구매자가 부적합을 발견했거나 발견한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였다.

3) 시사점

본 사건에는 CISG의 적용과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판결이 제시되었다. CISG의 제93조에 따라 언어가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본 사건이 CISG에 적용이 되었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피고인은 홍콩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므로 CISG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또한 CISG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CISG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제시일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결정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결해야 함을 언급하며 CISG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지 않고 각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됨에 따라 일률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3) 장난감사건³⁶⁾

1) 사실관계

박제 및 봉제 장난감을 제조 및 판매하는 중국 회사는 라이선스 제품을 제작, 제조 및 배포한 캘리포니아 유한 책임 회사(LLC)와 계약 및 사기 기반 청구를 주장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허가 된 물품을 만들고 제조하고, 배포하는 미국 매도인과 중국 매수인간의 박제 장난감 및 배송을 위한 서면 계약을 CISG로 규정했다.

2) 판결내용

LLC는 중국회사가 박제 장난감 의 판매 및 운송을 위한 판매계약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배상청구를 진출하지 못했다. 또한 상품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위반

36) Dongguan Beibei Toys Industry Co., Ltd. v. Underground Toys USA, LLC 2020 WL 2065034

및 특정 목적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 보증 위반에 대한 청구를 진술하지 않았지만 계약 사기에 대한 청구를 명시하였다. 계약위반의 증거에 대해 일부는 동의되었으며 일부는 거부되었다.

3) 시사점

CISG 제 39조는 매수인이 물품을 발견했거나 발견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의 적합성 부족의 본질을 명시하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상품의 적합성 부족에 의존할 권리를 상실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적합성이 부족하다는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물품이 실제로 인도된 날로부터 2년을 규정하고 있다. 본 판결에서는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을 합리적인 기간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적합통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계약 위반 청구를 포기했음을 주장했다.

2. 중재판정

(1) 화학약품사건³⁷⁾

1) 사실관계

루마니아 매도인과 독일 매수인은 화학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제품의 품질이 계약과 다르게 좋지 않다는 불만을 접수 한 후 매수인은 물품의 운송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매도인은 지불을 요구하는 중재절차를 시작했으며 매수인은 늦은 운송, 물품의 부적합 및 추가 선적의 부적합을 이유로 물품 비용의 청구를 거부했다.

2) 판정내용

이에 대해 중재판정소는 국제 물품 매매 분야에서 국제법의 진화를 반영하는 일련의 규칙인 CISG를 적용했으며 CISG의 제1조 1항의 규정에 충족되어 본 사건에 CIS의 적용이 가능했다.

물품 부적합의 주장과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이 물품이 계약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였으면 CISG 제39조에 따라 매수인은 배송된지 12일 후에 첫 번째 부적합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고 20일 후에 더 자세한 통지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CISG에서 규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했음을 판결했다.

3) 시사점

본 사건에 대해 중재판정부에서는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20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

37) ICC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Bulletin, Vol. 11, n.2, Fall 2000, 109-116.

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부적합을 통지한 것에 대해 적절한 통지 기간안에 통지했음을 인정했다.

(2) 장비사건³⁸⁾

1) 사실관계

이탈리아인 판매자와 러시아인 구매자는 특정 장비를 후자에게 배송해야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구매자는 계약에 서명한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선불을 수행해야 하는 반면, 후속 지불의 수행은 중립적인 관리자에 의해 발행된 선적 준비 상태의 SGS 인증서의 첫 번째 지불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매자에 의해 제시에 조건부로 이루어졌다. 권한판매자는 180일의 기한 내에 구매자에게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받기 위해 이탈리아로 올 것을 촉구했다. 이탈리아에 도착했을 때, 구매자는 판매자가 합의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락 증명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로부터 SGS 인증서를 받은 후에도 구매자는 대리인이 상품을 검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두 번째 지불을 거부했다.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구매자는 구매자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간 이자의 지급과 판매자의 장비 납품 지연으로 인해 계약에 의해 제공된 위약금의 회수를 주장했다. 판매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고, 구매자가 물품 인도를 거부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선급금 회수권을 박탈당하였다고 반대하였다.

2) 판정내용

당사자들은 CISG의 적용 가능성을 동의했다. 중재재판소는 매도인이 계약 기간 내에 SGS 인증서와 함께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매도인이 제출 한 문서조차도 장비 검사 시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장비의 선적 준비 상태 및 물품의 품질 적합성에 대한 증거를 구성할 수 없다. 매수인은 계약물품의 결함을 발견한 후 일주일 후에 계약적합성이 부족함을 통지함으로써 매도자에게 CISG 제39조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

3) 시사점

본 사건에서는 매수인은 계약물품의 결함을 발견한 후 일주일 후에 계약적합성이 부족함을 통지함으로써 매도자에게 CISG 제39조가 요구하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판정했다. 본 판정에서 합리적인 기간은 7일로 규정하므로써 7일 이내에 부적합통지를

38)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rt: Scientific - Practical Comments] Moscow (1999-2000) No. 46, 228-232

한 매수인의 주장에 인정하였다.

(3) 장비구매계약사건³⁹⁾

1) 사실관계

1991년 이탈리아 판매자와 캐나다 구매자는 장비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두 대의 기계와 엔지니어링, 감독, 액세서리를 공급하였다. 계약서에는 주문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결함에 대한 보증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사자들은 프랑스 법이 계약을 지배하는 법이며 모든 분쟁은 ICC 중재 규칙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 기계들은 1992년에 인도되었다. 1998년에 구매자와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자(이하 "원고")에게 할당하는 기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구매자가 기계 중 하나가 작동하지 않아 입은 손해를 보상한 후 판매자를 상대로 중재 절차를 요청하였다.

2) 판정내용

구매한 기계 중 한 대가 작동하지 않아 본 기계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손해를 보상한 후,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중재 절차 요청을 제기했다. 본 사건은 199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수인의 국가인 캐나다에서 CISG가 발효되기 전이긴 하지만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당사자의 법 선택에 의해 지배되어 당사자들이 CISG는 프랑스 제1496조 제17조 (1)에 언급된 국제법 규칙의 일부로 간주되어 협약은 프랑스 법률에 통합된 것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언급했다. CISG가 적용되면서 제39조의 합리적인 기간의 논란에 대하여 CISG가 합리적인 기간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내법인 프랑스 법률에 따라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프랑스 상법 제189조에 규정된 합리적인 기간은 10년으로 1991년의 협정 체결과 2000년 12월 중재요청 사이에 10년이 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청구가 이뤄졌으므로 합리적인 기간을 경과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기간을 10년으로 판결하였다.

3) 시사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39조 CISG에 규정된 2년 제한 기간 내에 적합하지 않음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제40조 CISG에 따르면, 판매자는 결함을 알았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 제38조 및 제39조에 의존할 권리가 없다. 재판소는 그러한 문제는 제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으며, CISG가 제한 기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내법(즉, 프랑스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9) ICC Court of Arbitration - Paris, No.1133, 2002

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관점에 따르면, CISG가 제공한 권리에 다른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CISG가 국제적 통일성을 증진하기 위해 회피하고자 했던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존재하는 차별을 인위적으로 다시 만드는 것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했다. 대신에, 프랑스 상법 제189조 bis에 규정된 일반적인 10년 제한 기간이 구체적인 소송 원인과 무관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따라서 1991년 협정 체결부터 2000년 12월 중재신청까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청구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았다.

3. 소결

계약부적합한 물품으로부터 매수인의 통지의무 중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CISG를 적용한 판례에서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부여된 기간이 현대기술을 접목한 물품으로부터 결함을 밝혀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을 부여하면서 매수인을 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제39조2항에 따르면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에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물품의 부적합의 권리를 상실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제39조 2항에서 언급한 2년이라는 기한을 정한 것은 2년 내에 물품을 결함을 제시하여 매수인을 구제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그 목적보다는 계약부적합한 물품에 대해 늦은 통보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임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본 조항에서 2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매수인 구제의 목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늦은 통보를 금지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CISG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ISG에서 2년이라는 기간을 규정으로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제시일 뿐 합리적인 기간에 대한 결정은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여야 함을 판결부가 언급함으로써 CISG에서 일률적인 합리적인 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한 판례도 살펴보았다. 외국판례와 중재판정을 살펴보았을 때 합리적인 기간으로 규정된 일자들을 살펴보면 7일, 20일, 2년, 10년 등으로 계약 물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짧은 기간을 부여하고 하였다. 합리적인 기간으로 제시된 통지의무에 기간에 따라 기간의 길고 짧음과는 별도로 매수인이 부적합통지의무를 주장이 인정되는 판결도 존재하였다. 사건의 합리적인 기간의 분석에 따르면 무조건 적으로 합리적인 기간을 길게 부여해달라는 주장보다는 각 제품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명확한 합리적인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혼란을 적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IV. 결 론

계약부적합한 물건의 인도는 실무 상의 국제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계약위반 형태이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품적합성이 있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계약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더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CISG 제35조 제2항은 매도인이 준수해야 하는 객관적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a호는 물품이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을, b호는 특별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b호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특별한 사용목적(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밝힌 경우) 목적물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성질을 지녀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을 특별사용목적(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a호에 따라) 물품이 동종 물품의 통상사용목적에 적합하면 충분하다.

물품매매거래에 있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는 매도인에게 부여된 중요한 계약사항이며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매수인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여된 의무에 의해 매수인은 인도받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인 경우 매도인을 상대로 물품이 계약과는 다름을 주장할 것이다. 이 주장에 있어 법원과 중재판정부는 물품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 인 통지의무의 ‘합리적인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CISG의 제39조는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판단과 함께 판례 및 중재판정에 따르면 2년의 제척기간의 경우 계약부적합한 물품에 대해 늦은 통보를 금지하기 위한 논점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였고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간이 없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원들과 중재판정부에 의해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계약위반으로 인해 부적합한 물품을 인도받은 매수인을 구제한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본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각국의 사법기관이나 중재기관이 통일된 법리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본 협약의 통일법적 지위 획득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통일법적 성격을 가진 CISG에 비추어 물품 매매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품 계약적합성에 관한 통지의무기간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하여 각 국의 실제 적용 사례들을 통하여 통일적인 원리를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제7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듯이 CISG의 규정해석에 있어 그 국제적인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을 증진할 필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대륙법체계에 속하는 국가들의 법제와 영미법 체계에 속하는 국가들의 법제가 빈번히 상호충돌하는 영역 중의 하나가 통지의무의 합리적인 기간에 관한 문제이므로, 본 협약에서 물품의 계약

적합성 영역에 대한 통지의무의 합리적인 기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징을 유념하여 앞으로도 계속 축적될 사례연구들을 통하여 통일된 세계법적 법원리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CISG는 완성된 법규범이 아니고 계약국의 법원들과 중재판정부들이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제규범이므로 CISG에 관한 외국 판례 및 중재판정례가 중요한 해석지침이 될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국제물품매매거래의 분쟁에 있어 CISG의 적용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꾸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규·이윤, “CISG 상 국제물품거래의 계약위반과 결과적 손해배상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2022.
- 심종석,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14권 제3호, 2012.
- 손태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상의 통일성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의 태도와 그 개선책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제47권 제1호, 2006.
- 임재욱, “국제물품매매계약(CISG)의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3호, 2014.
- 오원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제27권 제3호, 2002.
- 오원석·이병문, “국제물품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의 계약적합물품 인도 의무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제37권 제1호, 2008.
- 하강현, “국제물품매매에서 물품의 일치성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32권 제2호, 2007.
- 한나희·하충룡, “미국법원의 판례를 통한 CISG 적용상의 합의”,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연구, 제18권 제4호, 2016.
- Elderlein and Maskow, “International Sales Law, N.Y. Ocena, 1992.
- Harry M. Flechtner, “Funky Mussels, A Stolen Car, and Decrepit Used Shoes: Non-Conforming Goods and Notice thereof under the United Nations Sales Convention(“CISG”),” Bosto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6, 2008.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Fourth Edition, Wolters Kluwer, 2008.
- Peter Schlechtriem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CISG) Thi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R.F. Henschel, “The Conformity of Goods in International Sales, Thomson, Cad Jura, 2005.

ABSTRACT

A Study on the Duty of Nonconformity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Goods

Eun-Bin Kim

According to the CISG,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for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mong the obligations to notify the contractual suitability of the goods. As a result, many disputes arise in 'notification within a reasonable period' despite being the most important treaty in practice in defining the obligation to notify nonconformities according to the suitability of goods for each cas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9 of the CISG, various judgments and arbitration decisions are being made in each country for a reasonable period to notify that the goods are not suitable for the contract. There are criticisms that these various views are too harsh on the buyer in the buyer's obligation to notify. It is important to create a unified principle because courts or arbitrati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of this Convention interpret in various ways the reasonable period of violation of the contract of goods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Since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odity trading transactions around the world are regulated by the CISG,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interpret cases in which this Convention is applied in court or arbitral tribunal of each country to derive a unified principle.

Key Words : CISG, Breach of Contract, Conformity of goods, Duty to notify, Reasonable time